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채용공고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고용센터, 지자체 등)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을 공개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 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채용부문

○ 모집인원: 18명

지청	채용 인원(단위: 명)			근무 예정지	
	계	전임상담원	자립지원 전임상담원	전임상담원	자립지원 전임상담원
합계	18	12	6		
서울청	5	1	4		
서울동부	2		2		서울동부고용센터 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서울서부	1		1		서울서부고용센터 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서울북부	1		1		서울북부고용센터 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서울관악	1	1		서울관악고용센터	
부산청	4	4			
부산청	2	2		부산사하고용센터	
부산북부	2	2		부산북부고용센터	
대구청	2	1	1		
구미	1	1		구미고용센터	
영주	1		1		문경고용센터
광주청	3	3			
광주청	1	1		광주고용센터	
전주	1	1		정읍고용센터	
군산	1	1		군산고용센터	
대전청	4	3	1		
청주	1		1		청주고용센터
천안	3	3		천안고용센터	

II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단, 정년 연령인 만 60세 미만자)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자격 및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직무설명자료 참조) *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공립 직업안정기관, 국.공.사립학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기타	· 인사 관련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타 유의사항 참조)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III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시험형태: 3과목 각 객관식 40문항(총 120문항)
- 시험과목
 - 직업상담원: (필수) 고용보험법령(시행규칙 미출제), 직업상담학 (선택) 사회(정치, 경제, 사회문화) 또는 국민기초생활법령 (시행규칙 미출제) 중 1과목
 - 자립지원직업상담원: 고용보험법령(시행규칙 미출제), 직업상담학, 국민기초생활법령(시행규칙 미출제)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19.5.22.09:00 ~ 2019.5.29.18:00	• 워크넷 e-채용마당 ※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필기시험	2019.6.29. 10:00	• 시험형태: 3과목 각 40문항(총 120문항, 객관식) • 시험시간: 120분 • 장소: 대전 *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공지(6.21 공지 예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9.7.5. 12:00	• 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과목별 40점 이상, 성적순으로 지청별 및 직렬별 채용 인원의 3배수로 선발, 다만 지청별 및 직렬별 채용인 원이 2인 미만인 경우 4배수 선발
면접전형	2019.7.11.	• 직무능력, 품성, 가치관, 조직 적응력 등 평가 * 면접은 첨부된 직무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19.7.16. 12:00	• 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IV 우대사항

구분	우대사항		
자격사항 <필기전형>	구분	가점대상 자격증	가점
	직무관련	○ 직업상담사 1급	3점
		○ 직업상담사 2급 ○ 사회복지사(1급, 2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점
정보처리 분야	<input type="checkbox"/> 통신·정보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컴퓨터 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input type="checkbox"/> 사무관리분야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무관련 자격증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여러 개의 자격증을 제출하더라도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은 1개만 적용(여러 개의 자격증을 제출하더라도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p>취업지원 대상자 <필기·면접 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필기전형 시, 자격사항 가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모두 포함될 경우 중복 가산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V **접수서류**

제출 서류	제출 시기
<p>NCS기반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p> <p>※ 붙임 서식 활용</p>	<p>원서접수 시</p>
<p>자격요건 관련(해당부분 전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1부 	<p>면접 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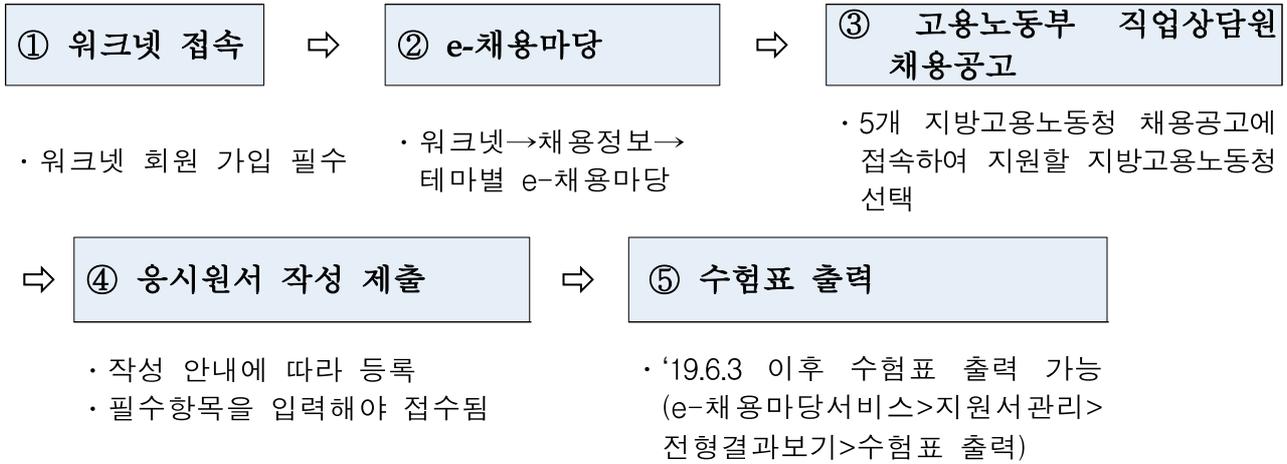
제출 서류	제출 시기
가점대상 자격증(해당부분 전체) · 직업상담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정보처리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div>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VI 근로조건

- 채용 예정일: '19.7.22
 - ※ 서울동부고용센터 채용예정인 자립지원전임상담원(2명)은 성적순으로 '19.7.22, '20.1.1자 채용 예정
 - ※ 서울북부고용센터 채용예정인 자립지원전임상담원(1명)은 '20.1.1자 채용 예정
- 수습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 ※ 교육성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고용여부 결정
- 보수수준: 전임직급 1호봉<붙임 보수표 참고>
 - ※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및 법정수당 별도
 -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장소
 - 전임상담원: 고용센터
 - * 근무상황에 따라 청 내 타 고용센터 전보 가능
 - 자립지원전임상담원: 고용센터 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 * 근무상황에 따라 청 내 타 고용센터 전보 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지원 근무 가능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직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VII 응시원서 접수절차



※ 지원서가 최종 제출되었음을 워크넷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II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참고3] 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자격이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하오니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근무희망 지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제외됩니다.
- **응시자는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5개 청 중에서 1개의 지청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중복하여 접수할 경우 0점 처리)**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본부(☎ 044-202-7337)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2-2250-5812)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51-850-6321)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53-667-6319)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62-975-6263)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42-480-6217)

<첨부1-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직업상담원)

채용분야	직업 상담원	분류 체계	대분류	07. 사회복지·종교		
			중분류	02. 상담		
			소분류	01. 직업상담서비스		
			세분류	01. 직업상담	02. 취업알선	■ 고용보험 수급지원 (세분류 자체개발)
기관 주요사업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고용보험 운영, 취업지원, 근로감독, 산업안전 등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주요업무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관리 ○ 직업정보관리 ○ 직업심리검사 ○ 직업훈련 상담 ○ 고용보험 수급지원					
주요업무 수행내용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관리) 구직자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을 분석하고, 구직활동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구인업체 정보수집과 구인정보 구축을 위한 정보관리 및 맞춤 알선을 위한 잡서칭과 매칭 업무 수행. ○ (직업심리검사) 내담자의 직업심리검사를 위한 검사도구 선택 및 실시. 직업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결과에 대한 내담자와의 상담업무 수행. ○ (직업정보관리 및 직업훈련 상담) 각종 수집된 직업정보의 분석과 내담자 특성별 정보 가공 및 제공, 가공된 직업정보 축적을 위한 업무 수행. 직업훈련 정보 분석을 통한 직업훈련 맞춤 정보 제공. 지원 제도 등 구직자 특성에 부합한 안내 및 상담업무 수행. ○ (고용보험 수급지원) 고용보험 관련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등 지급 지원업무 수행. 취업지원설명회 교육					
전형방법	○ 채용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연령	공고문 참조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필요지식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관리)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동향, 직업상담서비스 관련 법률, 직종별 구인구직정보 시스템, 고용정보 수집방법 및 동향에 대한 이해, 지역 내 직종별 고용현황, 해당직무 및 자격에 대한 이해 ○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이론, 직업심리검사도구 유형과 도구별 해석에 대한 지식, 대상별 내담자 특성, 의사결정론, 라포(Rapport)형성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정보관리 및 직업훈련 상담) 직무분석,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임금 및 근로조건, 의사결정론, 직업정보 관계법, 직업심리학, 직업상담심리학,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국가기술자격·전문자격 실시현황 및 과 정별 특징 ○ (고용보험 수급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준 및 지원 정책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관리) 내담자 구직요구도 분석능력, 취업상담능력, 구인구직 정보 탐색 및 분석 능력, 고용관련법률 해석능력, 다양한 구인구직정보 발굴 및 데이터 수집 능력, 직업심리검사 활용 능력 ○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도구 실시능력, 직업심리검사 해석능력, 직업심리검 사결과 판정능력, 내담자 검사 시 대응능력 ○ (직업정보관리 및 직업훈련 상담) 직무분석기법, 매체별 특성에 따른 직업정보 확인 및 가공 능력, 의사결정기법, 직업정보 분석 및 제공·관리 능력, 직업능력개 발훈련 정보 검색 및 분석능력, 국가기술자격·전문자격 검색 및 분석능력, 구직 자의 훈련과정 결정에 대한 조력 능력 ○ (고용보험 수급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기준에 따른 정보제공 및 지원 능력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태도, 주의 깊은 관찰과 경청의 자세, 내담자를 향한 개방적 태도와 배려심, 업무에 대한 사명감, 구인구직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노력, 변화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 정보관리에 대한 정확성
필요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직업기초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 www.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첨부1-2>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자립지원직업상담원)

채용분야	자립지원 직업상담원	분류 체계	대분류	07. 사회복지·종교		
			중분류	02. 상담		01. 사회복지
			소분류	01. 직업상담서비스		01. 사회복지정책
			세분류	01. 직업상담	02. 취업알선	03. 공공복지
기관 주요사업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고용보험 운영, 취업지원, 근로감독, 산업안전 등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발굴 및 기초상담 ○ 심층상담 및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수립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자활사업 참여 연계 ○ 대상자 사후관리 					
주요업무 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발굴 및 기초상담)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점검하고 핵심욕구 파악. 직업상담 및 사회복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안내 ○ (심층상담 및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면담기록을 바탕으로 자활참여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적 및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을 판단. 대상자의 주요 호소 이슈와 상담 동기를 확인하고,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내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자활사업 참여 연계) 분야별·단계별 고용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능력 미약자, 사회적응이 필요한 자, 자활동기부여가 필요한 자를 선별하여 다양한 고용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복지 자원으로 연계 ○ (대상자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전산망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조와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참여 대상자의 사후변동사항을 관리 					
전형방법	○ 채용공고문 참고					
일반요건	연령	공고문 참고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필요지식	○ (대상자 발굴 및 기초상담) 대상자 욕구 파악 및 욕구 분석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상담 및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직업상담 및 심리검사론, 대상별 내담자의 특성,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대상별 구직의 특성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자활사업 참여 연계) 취업성공패키지 및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지역사회 자활 사업 및 인프라에 대한 지식 ○ (대상자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및 사회보장정보 전산망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제2장의 2(자활지원)에 대한 지식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발굴 및 기초상담) 감정조절능력, 의사소통기술, 질문기술, 라포형성 기술 ○ (심층상담 및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경청기술, 대응과 직면기술, 면담기술능력,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 공감적 이해능력, 취업상담능력, 내담자 구직요구도 분석능력, 정신적·신체적 이상행동 이해 기법, 라포형성 기술, 대상자 직무에 대한 정보분석 능력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자활사업 참여 연계) 고용-복지서비스 적용 기술 ○ (대상자 사후관리) 직업상담 및 사회복지상담에서 효과적인 직면 기술, 사회복지실천 시작과 관계형성 기술, 고용노동부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용 및 활용 기술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발굴 및 기초상담) 복지대상자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태도, 수용적 태도, 경청하는 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무비판 비평가적 수용 태도, 비밀보장 자세,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 기록 자세, 개인정보 보호 자세 ○ (심층상담 및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내담자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 비밀보장을 지키는 태도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자활사업 참여 연계) 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 대상자의 자존감과 자활의지를 향상시키려는 자세, 대상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 생애주기별 자활-고용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 담당자로서의 윤리와 정체성을 실천현장에 적용하는 자세, 대상자에게 낙인감을 심어주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 ○ (대상자 사후관리) 적극적으로 민원 대응하는 자세,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세, 철저한 비밀유지 자세, 전자적 기록 작성을 성실히 하려는 자세,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자존감과 자립의지를 향상시키려는 자세, 적극적인 수용의지,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해심과 배려심, 내담자와 언제라도 의견조율이 가능한 친화력,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인내력
필요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 www.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2) 직업교육(직무관련 교육훈련)

* 직업교육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을 이수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주시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직업심리검사] 관련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직업(구인구직)상담] 관련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보험] 관련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 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과 정 명	주 요 내 용	교육기관	교육시간

3. 직무관련 경험 혹은 경력 사항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고 직무관련 경험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활동, 연구회 활동, 동아리/동호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봉사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직업심리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직업(구인구직)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전산시스템 운용]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 기입해 하고 기타 사항을 추가로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활동 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4. 직무관련 자격 사항

*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험 혹은 경력사항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1.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 노력] 그 동안의 경험에서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사고와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2. [의사소통능력] 지금까지의 경험 중 갈등이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하여 상황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3. [규정준수] 지금까지의 경험 중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4. [고객지향적 태도] 지금까지의 경험 중 타인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기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5.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자의 장점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고용노동부 귀중

<첨부2-2> NCS 기반 입사지원서(자립지원직업상담원)

지원분야	자립지원직업상담원(전임직급)	근무 희망지역	
------	-----------------	---------	--

1. 인적 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이메일)	
	(비상연락처)		

취업지원 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10%)	직무관련 가점 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3%)	정보처리분야 가점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1%)	정년 (만60세) 여부	<input type="checkbox"/> 만 60 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5%)		<input type="checkbox"/> 대상(2%)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input type="checkbox"/> 만 60 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2. 교육 사항

(1) 학교교육

* 학교교육은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주시십시오.

- [직업 심리 및 상담] 관련 학교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고용정책] 관련 학교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사회보장정책] 관련 학교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과 목 명	주 요 내 용

(2) 직업교육(직무관련 교육훈련)

* 직업교육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을 이수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주시십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직업 심리 및 상담] 관련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고용정책] 관련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사회보장정책] 관련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험 혹은 경력사항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1.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 노력] 그 동안의 경험에서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사고와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2. [의사소통능력] 지금까지의 경험 중 갈등이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하여 상황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3. [규정준수] 지금까지의 경험 중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4. [고객지향적 태도] 지금까지의 경험 중 타인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기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5.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자의 장점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고용노동부 귀중

<첨부3> 직업상담원 보수지급기준

(월 지급액, 단위: 원)

호봉	전임상담원 기본급	책임상담원 기본급	선임상담원 기본급	수석상담원 기본급
1호봉	1,750,000	1,979,750	2,136,120	2,317,060
2호봉	1,924,570	2,070,400	2,256,720	2,434,940
3호봉	1,976,320	2,120,220	2,311,040	2,503,110
4호봉	2,032,990	2,191,850	2,389,110	2,570,690
5호봉	2,084,020	2,249,670	2,452,130	2,635,930
6호봉	2,114,480	2,304,780	2,512,200	2,697,860
7호봉	2,158,640	2,360,100	2,572,500	2,759,920
8호봉	2,198,250	2,414,380	2,631,670	2,820,630
9호봉	2,242,790	2,467,480	2,689,550	2,882,680
10호봉	2,292,190	2,505,060	2,730,510	2,943,210
11호봉	2,341,420	2,547,770	2,777,060	3,005,010
12호봉	2,394,600	2,610,110	2,845,020	3,068,110
13호봉	2,450,730	2,671,280	2,911,700	3,132,540
14호봉	2,503,360	2,726,470	2,971,850	3,194,110
15호봉	2,561,900	2,781,510	3,031,850	3,255,410
16호봉	2,595,210	2,833,790	3,083,360	3,314,000
17호봉	2,631,870	2,868,740	3,126,920	3,373,650
18호봉	2,689,470	2,910,400	3,195,340	3,434,370
19호봉	2,741,890	2,964,550	3,237,630	3,497,890
20호봉	2,772,350	3,030,000	3,315,150	3,553,850
21호봉	2,831,730	3,096,630	3,378,570	3,610,710
22호봉	2,886,910	3,160,790	3,415,850	3,668,480
23호봉	2,926,950	3,199,130	3,454,900	3,725,910
24호봉	2,957,680	3,233,530	3,519,000	3,781,790
25호봉	3,015,290	3,292,130	3,585,390	3,834,610
26호봉	3,068,630	3,344,810	3,649,830	3,888,290
27호봉	3,117,730	3,398,310	3,708,850	3,942,720
28호봉	3,166,600	3,451,590	3,764,220	3,997,910
29호봉	3,215,110	3,504,470	3,820,870	4,055,160
30호봉 (최고호봉)	3,263,330	3,557,020	3,880,160	4,111,910

<첨부 4> 취업지원 관련 법률

법률	조항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p>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개정 2011.9.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p>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15.></p> <p>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p>
<p>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p>	<p>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p> <p>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법률	조항
	<p>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p> <p>가. 애국지사의 가족</p> <p>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p> <p>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p>
<p>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p> <p>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p> <p>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p> <p>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p> <p>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p> <p>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p>
<p>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p>	<p>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p> <p>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p> <p>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p> <p>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p> <p>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p> <p>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p> <p>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p>
<p>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p>	<p>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p> <p>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p> <p>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p> <p>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p>

법률	조항
	<p>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p> <p>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p> <p>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p> <p>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p> <p>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p> <p>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p> <p>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p> <p>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p> <p>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p>
<p>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p>	<p>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p> <p>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p> <p>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p> <p>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p> <p>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p> <p>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p> <p>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p> <p>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p> <p>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p> <p>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p> <p>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p> <p>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p> <p>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p> <p>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p>

【첨부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필요시 채용 절차 종료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지방고용노동청 귀중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